

#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기 관 명 호수유치원  
내 용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및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장이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정수는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은 5명 이상 8명 이하로 정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은 학부모위원이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교원위원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호수유치원은 아래 [표1]와 같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 (1) 2018학년도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법령에 따른 5~8명이 아닌, 4명으로 구성하는 등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한 사실이 있으며,
- (2) 2018학년도 및 2020학년도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구성 비율을 규정에 맞지 않게 구성하는 등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한 사실이 있으며,
- (3) 2018~2019학년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연직 교원위원인 사립유치원의 ○○을 교원위원으로 포함하지 않고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한 사실이 있다.

[표1] 호수유치원 2018~2020학년도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

학년도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위원수 합계 (C=A+B)	적정 위원 수	적정비율		비고
	위원수 (A)	비율	위원수 (B)	비율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2018	2	50%	2	50%	4	5~8	30~40	60~70	당연직 교원위원 미반영
2019	2	40%	3	60%	5				
2020	3	60%	2	40%	5				

※ 상기 내역은 호수유치원에서 제출한 서류에 따름

**조치할 사항 호수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교직원 범죄 경력 조회 부적정  
기 관 명 호수유치원  
내 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하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런데 호수유치원은 [표2]와 같이 2018~2020학년도에 채용한 일부 교직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등 채용관련 서류를 일부 누락 또는 분실한 것으로 소명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조회·확인 여부를 알 수 없게 한 사실이 있다.

[표2]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확인 불가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직위	근무기간	재직상태	비고
1	○○○	19XX.XX.XX.	○○○○	20XX.XX.XX.~현재	현)재직	
2	○○○	19XX.XX.XX.	○○○○	20XX.XX.XX.~20XX.XX.XX.	퇴직	
3	○○○	19XX.XX.XX.	○○○○	20XX.XX.XX.~20XX.XX.XX.	퇴직	
4	○○○	19XX.XX.XX.	○○○○	20XX.XX.XX.~20XX.XX.XX.	퇴직	
5	○○○	19XX.XX.XX.	○○○○	20XX.XX.XX.~20XX.XX.XX.	퇴직	
6	○○○	19XX.XX.XX.	○○○○	20XX.XX.XX.~20XX.XX.XX.	퇴직	
7	○○○	19XX.XX.XX.	○○○○	20XX.XX.XX.~20XX.XX.XX.	퇴직	
8	○○○	19XX.XX.XX.	○○○○	20XX.XX.XX.~20XX.XX.XX.	퇴직	
9	○○○	19XX.XX.XX.	○○○○	20XX.XX.XX.~20XX.XX.XX.	퇴직	
10	○○○	19XX.XX.XX.	○○○○	20XX.XX.XX.~20XX.XX.XX.	퇴직	
11	○○○	19XX.XX.XX.	○○○○	20XX.XX.XX.~20XX.XX.XX.	퇴직	
12	○○○	19XX.XX.XX.	○○○○	20XX.XX.XX.~20XX.XX.XX.	퇴직	
13	○○○	19XX.XX.XX.	○○○○	20XX.XX.XX.~20XX.XX.XX.	퇴직	
14	○○○	19XX.XX.XX.	○○○○	20XX.XX.XX.~20XX.XX.XX.	퇴직	

※ 상기 내역은 호수유치원에서 제출한 서류에 따름

**조치할 사항 호수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교직원 채용 및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회계 업무 부적정(국세, 지방세, 4대보험 및 연말정산 미실시)  
기 관 명 호수유치원  
내 용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지급명세서를 해당 지급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에 따라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애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 바, 일용근로자 및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제10조(적용 제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에 따라 고용보험법은 적용 제외 근로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런데 호수유치원은 아래 [표3]와 같이 감사대상기간인 2018~2019학년도 중 근로한 교직원의 일부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사대보험,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각각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3] 호수유치원 교직원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연말정산 미실시 내역

[단위: 원]

회계연도	성명	직책	급여총계	납부 및 실시 여부 (O,X)							비고	
				소득세	주민세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양호보험	고용보험		연말정산
2018	○○○	○○○○	77,400,000	X	X	X	X	X	X	X	X	
	○○○	○○○○	25,700,000	X	X	X	X	X	X	X	X	
	○○○	○○○○	4,000,000	X	X	X	X	X	X	X	X	
	○○○	○○○○	5,500,000	X	X	X	X	X	X	X	X	
	○○○	○○○○	11,950,000	X	X	X	X	X	X	X	X	
	○○○	○○○○	22,370,000	X	X	X	X	X	X	X	X	
	○○○	○○○○	6,890,000	X	X	X	X	X	X	X	X	
	○○○	○○○○	3,710,000	X	X	X	X	X	X	X	X	
	○○○	○○○○	850,000	X	X	X	X	X	X	X	X	
2019	○○○	○○○○	35,000,000	X	X	X	X	X	X	X	X	
	○○○	○○○○	17,380,000	X	X	X	X	X	X	X	X	
	○○○	○○○○	5,950,000	X	X	X	X	X	X	X	X	
	○○○	○○○○	7,400,000	X	X	X	X	X	X	X	X	
	○○○	○○○○	900,000	X	X	X	X	X	X	X	X	
	○○○	○○○○	4,500,000	X	X	X	X	X	X	X	X	
	○○○	○○○○	12,600,000	X	X	X	X	X	X	X	X	
	○○○	○○○○	1,800,000	X	X	X	X	X	X	X	X	
	○○○	○○○○	5,880,000	X	X	X	X	X	X	X	X	
2020	○○○	○○○○	4,320,000	X	X	X	X	X	X	X	X	
	○○○	○○○○	27,140,000	X	X	X	X	X	X	X	X	
	○○○	○○○○	16,700,000	X	X	X	X	X	X	X	X	
	○○○	○○○○	12,150,000	X	X	X	X	X	X	X	X	
	○○○	○○○○	9,100,000	0	X	X	X	X	X	X	X	일부 미실시

※ 금액 및 내역은 호수유치원의 현금출납부 및 유치원에서 제출한 서류에 따름

## 조치할 사항 호수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신고 누락된 교직원의 급여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통보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